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139

제출년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현행 시민의 장 5개 부문 중 유사 중복되어 있는 부문과 확대가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의 종류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봉사장을 애향봉사장으로, 지역개발장을 향토발전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나. 문화체육장을 문화예술장과 체육진흥장으로 분리(안 제2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애향봉사장
2. 향토발전장
3. 효행선행장
4. 문화예술장
5. 체육진흥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총 무 과
입	실 · 과장 직위 ·성명	총 무 과 장 장 위 순
안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시 정 팀 장 정 우 상
자	담 당 자 성명 · 전화	주무관 박정호 860-212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민의 장) 시민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봉사장 2. 문화체육장 3. 지역개발장 4. 효행·선행장 5. 향토·애향장	제2조(시민의 장) ---------- --- **1. 애향봉사장** **2. 향토발전장** **3. 효행선행장** **4. 문화예술장** **5. 체육진흥장**